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소재한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관계 주민분들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3. 25.

아 산 시 장

1. 사업의 개요

| 사용허가 대상지 | | | | 사용의 사유 | 사용의 기간 |
|------------|--------|----|-------------------------|-------------------------------|----------------------------|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사용면적 | | |
| 탕정면 동산리 | 551-18 | 구거 | 2,523/271m ² | 통행로(마을안길) 개설 및 벤치플룸관 설치 | 허가일로부터 ~ 2026.06.31. |

2.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 열람기간 : 2024. 3. 25. ~ 2024. 4. 08. (14일간)
- 열람방법 및 장소 : 아산시 건설정책과 농업기반시설팀에 비치된 설계문서 확인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4. 3. 25. ~ 2024. 4. 08. (14일간)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의견서 제출
- 기타 궁금하신 의견 있으신 경우 아산시 건설정책과 문의(☎041-540-2996)